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가 족 정 책 과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의료·생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나. 추진근거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2)「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제14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다. 위탁사무

(1) 상담업무 : 노동·법률·의료분야 상담 등

(2) 교육업무 : 한국 적응을 위한 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3) 기타업무 : 문화행사, 의식주 제공 등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마. 위탁조건

(1)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최근 3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 관련 상담센터(쉼터)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2)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차기간 1년 이상)

(3) 필수 인력 및 시설 요건

- 상담센터 : 사무공간 및 분리된 상담실 확보
- 쉼터 :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주거 공간 등 확보
- 센터장 1명, 상담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센터장, 상담인력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바. 소요예산 : 1,624백만원(도비 487, 시비 1,137)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2)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14조

(3)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라. 민간위탁 사무 감사 결과

마.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기　　간 : 2026. 9. 15.(화) ~ 9. 22.(화)

○ 위탁사무명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 위탁기관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외국인주민센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평 가 자 : 3명(가족정책과장, 외국인정책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평가지표 : 4개 항목, 100점 만점

- 공통분야(60점) : 운영실적(10), 예산집행(50)

- 개별분야(40점) : 단체전문성(10), 사업달성도(30)

부 문	평가항목	배 점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외국인주민센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공통(60점)	운영실적	10	10	10	10	8	10
	예산집행	50	50	48	50	50	48
소 계		60	60	58	60	58	58
개별(40점)	단체전문성	10	10	10	10	5	10
	사업달성도	30	26	27	25	20	30
소 계		40	36	37	35	25	40
총 점		100	**96**	**95**	**95**	**83**	**98**

2. 평가결과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 96점(탁월)
○ 구미외국인주민센터 : 95점(탁월)
○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 95점(탁월)
○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83점(우수)
○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 98점(탁월)

3. 총　　평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쉼터)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생활 등 관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록 및 증빙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필요

2026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위탁사무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 감사대상 : 5개소(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4개소, 쉼터 1개소)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외국인주민센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 감사기간 : 2026. 9. 15.(화) ~ 9. 22.(화)

○ 감사범위 : 2025. 10. 1. ~ 2026. 8. 31.

○ 감 사 반 : 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팀장 및 담당자 ※감사반장: 가족정책과장

○ 감사방법 : 실지감사(현지방문 점검)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주의 2건(구미외국인주민센터 1,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1)

- 구미외국인주민센터·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 지출 시, 견적서 일부 누락

분야별	감사내용 (검토 또는 조치사항)	조치계획(의견)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외국인주민센터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규정준수	위·수탁협약서 및 관련 지침 등 준수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재무회계 관리	위탁금 관리, 제3자 위탁 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통장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	적정	주의	적정	적정	주의
조직관리	출근부 등 근무상황 확인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급여지급 기준, 4대 보험 적정 납부 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문서관리	수탁사무 추진 관련 문서관리, 운영일지 등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기타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 처분내용 :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구비하고, 적정하게 보관 및 관리하도록 조치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입	○도비	157,250	162,900	167,100	487,250
	소계(a)	157,250	162,900	167,100	487,250
세출	○인건비	390,000	402,000	414,000	1,206,000
	○운영비	44,180	46,000	47,000	137,180
	○사업비	90,000	95,000	96,000	281,000
	소계(b)	524,180	543,000	557,000	1,624,180
□ 총 비용(b-a)		366,930	380,100	389,900	1,136,93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	-	-	-
도 비	157,250	162,900	167,100	487,250
시 비	366,930	380,100	389,900	1,136,930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524,180	543,000	557,000	1,624,180

5. 부대의견 : 본 사업은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비용추계는 기존 운영 규모인 5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향후 도비 편성 및 공모결과, 운영여건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팀 김화빈(☎480-653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항 목	계(천원)	산 출 기 초
2027	**합 계**	**524,180**	
	인건비	390,000	• 센터장 : 1,200,000원 × 12월 × 5개소 = 72,000,000원 • 상담팀장 : 2,900,000원 × 12월 × 5개소 = 174,000,000원 • 상담원 : 2,400,000원 × 12월 × 5개소 = 144,000,000원
	운영비	44,180	• 홍보물품 제작 : 2,000원 × 1,000부 × 5개소 = 10,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 800,000원 × 1회 × 5개소 = 4,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53,000원 × 12월 × 5개소 = 21,180,000원 • (센터) 교육 및 행사 운영물품 등: 625,000원 × 2회 × 4개소 = 5,000,000원 (쉼터) 운영물품 및 부식비 등 : 4,000,000원 × 1개소 = 4,000,000원
	사업비	90,000	• 한국어교육 등 강사수당 : 50,000원 × 200회 × 5개소 = 50,000,000원 • 한국어교재 구입 : 30,000원 × 100권 × 5개소 = 15,000,000원 • 문화행사 및 체험활동 : 2,500,000원 × 2회 × 5개소 = 25,000,000원
2028	**합 계**	**543,000**	
	인건비	402,000	• 센터장 : 1,240,000원 × 12월 × 5개소 = 74,400,000원 • 상담팀장 : 2,990,000원 × 12월 × 5개소 = 179,400,000원 • 상담원 : 2,470,000원 × 12월 × 5개소 = 148,200,000원
	운영비	46,000	• 홍보물품 제작 : 2,000원 × 1,000부 × 5개소 = 10,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 1,000,000원 × 1회 × 5개소 = 5,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60,000원 × 12월 × 5개소 = 21,600,000원 • (센터) 교육 및 행사 운영물품 등: 650,000원 × 2회 × 4개소 = 5,200,000원 (쉼터) 운영물품 및 부식비 등 : 4,200,000원 × 1개소 = 4,200,000원
	사업비	95,000	• 한국어교육 등 강사수당 : 50,000원 × 200회 × 5개소 = 50,000,000원 • 한국어교재 구입 : 30,000원 × 100권 × 5개소 = 15,000,000원 • 문화행사 및 체험활동 : 3,000,000원 × 2회 × 5개소 = 30,000,000원
2029	**합 계**	**557,000**	
	인건비	414,000	• 센터장 : 1,280,000원 × 12월 × 5개소 = 76,800,000원 • 상담팀장 : 3,080,000원 × 12월 × 5개소 = 184,800,000원 • 상담원 : 2,540,000원 × 12월 × 5개소 = 152,400,000원
	운영비	47,000	• 홍보물품 제작 : 2,000원 × 1,000부 × 5개소 = 10,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 1,000,000원 × 1회 × 5개소 = 5,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70,000원 × 12월 × 5개소 = 22,200,000원 • (센터) 교육 및 행사 운영물품 등: 675,000원 × 2회 × 4개소 = 5,400,000원 (쉼터) 운영물품 및 부식비 등 : 4,400,000원 × 1개소 = 4,400,000원
	사업비	96,000	• 한국어교육 등 강사수당 : 50,000원 × 200회 × 5개소 = 50,000,000원 • 한국어교재 구입 : 30,000원 × 100권 × 5개소 = 15,000,000원 • 문화행사 및 체험활동 : 3,100,000원 × 2회 × 5개소 = 31,000,000원

소 관 부 서		가족정책과
입	과 장	홍 경 화
안	팀 장	박 은 희
자	담 당 자	김 화 빈 (480-6533)